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정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380

발의연월일: 2025. 5. 7.

발 의 자:김정재·엄태영·박충권

권영진 · 김대식 · 김성원

김기현 • 이헌승 • 김선교

김 건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입소노인의 보호·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치매·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노인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이 빈번하게 행하여지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의 신체적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고 각 시설별 개별 지침에 의존하고 있어, 표준화된 지침을 제정하고 관련 내용을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자 및 그 종사자들에게 교육할 필요성이 제기됨.

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에 대한 신체적제한의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지침을 작성·배포하도록 하고,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에 그 지침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입소노인에 대한 과도한 신체적 제한을 예방하고 노인의 권익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6조의3

제1항 후단, 제3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3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이 경우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은 제35조제5항에 따른 지침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 제35조의 제목 "(老人醫療福祉施設의 設置)"를 "(노인의료복지시설의설치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④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이 치매· 중풍 등으로 인하여 자신과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가 현저하게 위험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신체적 제한 은 입소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.
 -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체적 제한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을 작성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배포하여야 한다.

제43조제1항제1호 중 "제35조제4항"을 "제35조제6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6조의3(인권교육) ① 제31조의 제6조의3(인권교육) ① ----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 ·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(이하 이 조에서 "인권교 육"이라 한다)을 받아야 한다. <후단 신설> --. 이 경우 노인의료복지시설 을 설치·운영하는 자와 그 종 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은 제35조 제5항에 따른 지침의 내용을 포 함하여야 한다. ② ~ ⑤ (생 략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第35條(老人醫療福祉施設의 設置) 第35條(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 ~ ③ (생 략)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④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이 <u>치매·중풍 등으로 인하여 자</u> 신과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가 현저하게 위험한 경우에 한하 여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신체적 제한은 입소노 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④ (생략)

- 第43條(사업의 정지 등) ①시·도 第 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은 노인주거복지시설, 노인의료 복지시설 또는 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 률」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廢止를 명할 수 있 다.
 - 1. 제33조제4항, <u>제35조제4항</u> 또는 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 조제6항에 따른 시설 등에 관 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
 - 2. ~ 5. (생략)
 - ② ~ ④ (생 략)

따른 신체적 제한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
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
항은 지침을 작성하여 노인의
료복지시설에 배포하여야 한다.
<u>⑥</u> (현행 제4항과 같음)
543條(사업의 정지 등) ①
1제35조제6항
2. ~ 5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현행과 같음)